

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86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」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(안 제4조)
- 나.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조문 체계 정비(안 제8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2025. 9. 9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책무)”를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다른 실태조사”를 “대한 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년마다”를 “5년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지위향상에 대한 계획”을 “지위향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”을 “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

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

2. 장기요양요원

3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노인복지과
입 안 자	노인복지과장	박 현 정
	노인요양팀장	장 선 주 (481-3105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<u>따른 실태 조사</u>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<u>시장의 책무</u>) ----- ----- ----- <u>대한 실태 조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<u>3년마다</u>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<u>지위향상에 대한 계획</u> 2. 장기요양요원의 <u>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</u> 3. (생략) 	<p>제4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지위향상에 관한 사항</u> 2. ----- <u>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</u> 3. 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(생략)</p>	<p>제5조(처우개선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 -- 위하여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② -----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, ----- 호선(互選)한다.</p>
<p>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1. 시의회 의원 2. 장기요양요원 3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	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1. 시의회 의원 2. 장기요양요원</p>
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</p>	<p>3.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u></p>	<p><u>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 <u>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 <u>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u></p>
<p><u>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</u><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</u>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</u><u>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10조(위원회 운영) ①</u><u>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</u> <u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③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<u>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</u>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</u></p>	<p><u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<u>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
<p><u>제12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3조(준용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